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

보도자료

보도 시점 2025. 12. 23.(화) 12:00 배포 2025. 12. 23.(화) 10:00 (브리핑 10:30)

고환율 흐름 속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긴 「시장 교란행위 탈세자」 세무조사

① 가격담합 등 독·과점 기업 ②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
③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④ 외환 부당유출 기업, 총 31개 업체

【관련 국정과제】 65.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

1 세무조사 추진배경

□ **"짠테크, 무지출 챌린지"** 등 **필수적인 소비**마저 줄이는 것이 **유행**일 만큼, **고환율*** **흐름 속**에 **물가**는 **가파르게 오르고** 있는 반면, **서민들의 주머니 사정**은 **가벼워지고** 있어, **생활비 부담**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

* 연평균 원/달러 환율이 올해 최초로 1,400원대 돌파 전망

○ 최근 **우리 경제**는 **완만한 회복세**를 보이고 있으나, **고환율**에 **연동**된 **물가상승 압력*** 등 **시장 불안 요인**도 **상존**하고 있습니다.

* ('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) JP모건, 노무라, UBS 2.0% → 2.1% (11월 기준)

○ 특히, 우리나라 경제는 **수입 의존도**가 **높아,**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**환율**이 **물가**에 미치는 영향이 **큰 구조**인데,

- **고환율**이 **지속**되면서 농·축·수산물(5.6%↑)과 석유류(5.9%↑) 등 **수입 비중**이 **높은 품목**을 중심으로 **가격 오름세***가 **두드러지고** 있습니다.

* (전년 11월 대비) ①소비자 물가상승률 2.4%, ②생활물가(식료품 등) 상승률 2.9%(국가데이터처)

□ 이와 같이 **시장**의 **불안정성**이 **커지는 국면**에서, 일부 기업들은 겉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, 원화 약세 등 **외부요인**을 **가격인상**의 **명분**으로 내세우면서,

○ 실제로는 **가격담합**이나 **시장우월적 지위**(독·과점) **남용** 등을 통해 **원가 상승폭**을 **상회**하는 수준으로 **판매가격**을 **인위적으로 조정**하고 있습니다.

-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, **수요와 공급의 원칙**에 따라 **가격**이 **결정**된다는 **시장원리**를 **훼손**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**"매점매석*"**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.

*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, 상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대기하는 행위

○ 이에 더해, **비거주자**의 **외화자금**을 국내자금과 구분·관리하기 위한 **대외계정**을 활용해 **편법적**으로 **외화**를 **유출**하여 **환율 변동성**을 키우는 등

- **경제 불안정성**을 **확대**시키는 다양한 **"시장 교란행위"**가 발생하고 있어, **엄정한 대응**이 필요합니다.

2 세부 추진내용

□ 이에,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**물가안정**은 **민생안정**의 **시작이자 끝**이라는 **국민주권정부**의 **국정운영기조**에 발맞춰,

○ **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**을 부추겨 **민생경제**를 **어렵게** 만들면서도, **정당한 납세의무**는 **회피**하고 **부당한 이득**을 챙겨 온 **「시장 교란행위 탈세자」**에 대한 **세무조사**(2차, 12월)를 **전격 실시**합니다.

○ 이는, 가공식품 제조·판매 업체 등 **「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**(55개)**」**에 대한 **세무조사**(1차, 9월)에 이은 **두 번째 세무조사**로,

- **시장 불안**을 틈타 더욱 교묘해지는 **탈루행위**에 대해 **다시 한번 경종**을 울려, **공정한 시장질서**를 확립하고자 합니다.

□ 이번 조사대상자는 **❶ 가격담합 등 독·과점 기업, ❷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, ❸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, ❹ 외환 부당유출**로 **환율 불안**을 **유발**하는 **기업** 등 **물가상승**을 **야기**하는 **총 31개 업체**로, 이들의 **전체 탈루혐의 금액**은 **약 1조 원**에 이릅니다.

- **조사대상**은 **경제·산업동향, 언론보도, 유관기관 정보**를 **종합적**으로 **검토**하고, **원가 신고내용** 및 **유통과정** 등을 **정밀하게 분석**하여 선정하였습니다.

① **시장 우월적 지위**를 **남용**하여 **사익**을 **취한** **「가격담합 등 독·과점 기업」** (7개)

② **관세인하 혜택**은 누리면서, **부당이득**을 챙긴 **「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」** (4개)

③ **소비자 주권**을 **침해**하는 **"숨은 가격인상"** 등 **「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」** (9개)

④ **법인자금**으로 **고가 해외자산 취득** 등 **환율 불안**을 자극한 **「외환 부당유출 기업」** (11개)

[유형 1]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취한 「독·과점 기업」: 7개

□ 첫 번째 조사대상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뒤로한 채 **가격담합, 시장지배력 남용** 등 **비(非)시장적 수단**을 이용해,

○ 수요와 공급에 따른 **정상가격**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**가격을 부풀려** 동종업계 대비 **높은 초과이윤**을 챙긴 「**독·과점 기업**」입니다.

□ 이들은, **일부 업계**의 **고질적 병폐**로 자리 잡은 **가격담합**을 통해, **시장의 자율적 가격결정 기능**을 **무력화**하고 **시장경제**의 **근간**을 흔들었습니다.

○ 조사대상 업체는, 담합업체들과 **사다리 타기·제비뽑기** 등을 통해 **낙찰순번**을 정하여 **"나눠먹기식 수주"**를 하면서,

- **들러리 업체**에게 **입찰 포기**의 **반대급부**로, **공사 계약금액**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**담합사례금**으로 **지급**하고, **거짓 세금계산서**를 **수취**하는 한편, **회사의 비용**으로도 **처리**하였습니다.

> ‣ 원고가 동종 업체들에게 지출한 이 사건 **담합사례금**은 **그 지출 자체**가 **사회질서에 반하는 것**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**통상적인 비용**이나 **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**에 **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** (대법원, 2017두51310)

□ **과거 수년간의 가격담합**으로 **제재**를 받은 또 다른 업체는, **수도권**에 **소재**한 **호텔**을 운영하면서, **사주 자녀**가 **최대주주**로 있는 **특수관계법인**에게 **시가보다 낮은 가격**으로 **건물**을 **임대**하는 방식으로 **이익**을 **분여**하였습니다.

○ 이는, **가격담합** 등 불공정 행위로 **시장질서**를 **훼손**한 기업이 **사주일가 배불리기** 등 **오로지 사익**을 **추구**하는데 **몰두**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

□ 이번 조사에서는 담합사례금 등 **단순히 비용**을 **부인**하여 **경제적 불이익**을 주는 데 **그치지 않고,**

○ **거짓 세금계산서 수수** 등 **범죄행위** 확인 시 **조세범처벌법**에 따라 **고발**하여 **형사처벌**까지 받도록 하는 등 **시장 교란행위**는 **끝까지 추적**하여 **근절**하겠습니다.

[유형 2] 관세인하 혜택은 누리면서, 부당이득은 챙긴 「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」: 4개

□ 두 번째 조사대상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**할당관세**를 적용받아, **원재료**를 **저렴**하게 **수입**할 수 있는 **혜택**을 누리면서도, 이를 **판매가격**에 **반영하지 않는 방식**으로 **이익**을 **극대화**한 「**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**」입니다.

▸ **할당관세(Quota Tariff) : 물가안정** 및 특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**농·축·수산물**, **가공식품 원료** 등에 대해 **관세율**을 **낮춰** 주는 제도(관세법 제71조)

○ 이들은, **물가안정**이라는 **공익적 목적**으로 도입된 정책을 **본래의 취지**대로 **작동하지 못하도록** 하여 **할당관세 정책**을 **형해화**하고 있습니다.

| 할당관세 적용 주요 농축산물 가격추이 |

<출처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축산물품질평가원자료 재구성>

□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, **사주**의 **자녀**가 운영하는 **특수관계법인**을 유통과정 중간에 끼워넣고, **관세 감면**을 받은 **원재료**를 **저가**에 **공급**하는 등 **부당하게 이익**을 **분여**하는가 하면,

○ **특수관계법인**에게 **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입**과 관련된 선적·물류·통관 등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면서, **관련 수입대행용역**을 과세가 아닌 **면세로 신고**하여 **부가가치세**를 **탈루**하기도 하였습니다.

□ 또 다른 업체는, **할당된 물량**을 **초과**하여 재화를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**고율**의 **관세**를 **회피**하기 위해,

○ **협력업체**의 **명의**를 빌려 **재화**를 **수입**한 후, 실제로는 **조사대상 업체**가 해당 재화를 **직접 가져가면서도**, 마치 협력업체로부터 **재화**를 **매입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**를 **수취**하기도 하였습니다.

[유형 3] "숨은 가격인상"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「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」: 9개

□ 세 번째 조사대상은 치킨, 빵 등 **서민들의 지출 비중***이 **높은 외식분야**에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은근슬쩍 중량만 줄이는 **"용량꼼수"**를 통해

* '25.1분기 가계 지출 중 식료품 및 외식지출 비중은 29.2% (국가데이터처)

○ 소비자의 **합리적 선택**을 **의도적**으로 **왜곡**되게 만들면서, **편법적인 방법**으로 **사적 이익**을 **추구**하고 있는 「**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**」입니다.

□ 이들은,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실질가격을 높이는 **"숨은 가격상승" 행위**로 **서민들의 밥상물가**를 **지속적**으로 **상승**시켰습니다.

○ 이 과정에서, 조사대상 업체는 **원재료·부재료 판매업체**와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**계열법인**을 거래단계 중간에 **끼워넣어** 시가 대비 **고가**로 **매입**하는 한편,

- **사주일가**가 소유하고 있는 **가맹점**을 **인수**하면서, **권리금**을 **과다**하게 **지급**하여 **이익**을 **분여**하기도 하였습니다.

○ 그 결과, **불투명한 유통과정** 속에서 **부풀려진 원가**는 **결국 가격 인상**으로 이어져, 그 부담은 고스란히 **국민들의 몫**으로 돌아갔습니다.

□ 또 다른 업체는, **대표이사**가 점주로 있는 **가맹점**의 **가맹비** 및 **인테리어** 등 **창업 관련 비용**을 **회사**가 **대신 부담**하는가 하면,

○ **법인**의 **신용카드**를 사용하여 **골프장 이용**, **명품구입** 등 **호화생활**을 누리면서도, 이를 **비용**으로 처리하여 **소득**을 **줄이기도** 하였습니다.

|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된 주요 소비자 댓글 (일부 재구성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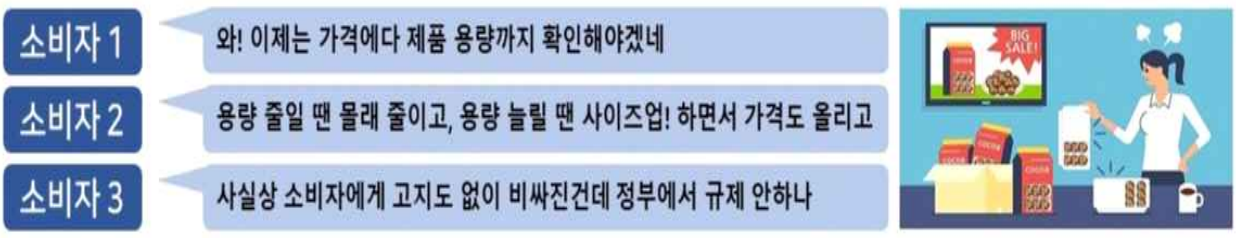

[유형 4] 편법적 수단으로 국부를 유출한 「외환 부당유출 기업」: 11개

□ 네 번째 조사대상은 **법인자금**을 **편법**으로 **유출**하여, **고가**의 **해외자산**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**불필요한 외환 수요**를 **증가**시키거나,

○ **외화자금**의 **원활한 유치 목적**으로 **도입**된 **대외계정**을 이용하여 **국외**로 **외환**을 **부당**하게 **빼돌린** 「**외환 부당유출 기업**」입니다.

▸ **대외계정 : 외국인 거주자, 외국법인, 비거주자** 등이 **외화 예치 목적으**로 개설한 **예금계정**

□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, **법인자금**을 사용하여 단순히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내는 것을 넘어, **가족 전체**를 **이주**시키고 **고액 부동산, 고급콘도, 호화요트 취득** 등 **국민 눈높이**에 **맞지 않는 사치생활**을 **영위**하였습니다.

○ 특히, 이들 중 일부는 **100% 자회사**인 **해외 현지법인**에게 **지급보증용역**을 **무상 제공**하여 **국내은행**에서 **거액의 외화**를 **차입**할 수 있도록 하고,

- 그 차입금으로 **수백억 원**에 달하는 **골프장**을 **인수**하는 등 **법인의 외화자금**을 업무와 무관한 **고가의 자산**을 **취득**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.

□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**외국 국적**을 **보유**하고 **국내**에서 **다수의 법인**을 **운영**하고 있는, 이른바 **검은머리 외국인**으로 불리는 자들로,

○ 수출대금 등 사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**외국인 지위**를 이용해 **개설**한 **대외계정**을 통해 **수취**하고, **개인소득세 신고**를 **누락**하였습니다.

○ 이에 더해, **과소신고**한 **소득**이 **노출되지 않도록** 자신이 대표로 있는 **법인**에게 **수십억 원**의 **자금**을 **대여**한 후,

- **법인 명의**로 **고가**의 **펜트하우스**를 **취득**하여 **사주일가 전체**가 **거주**하고, **내부 인테리어, 가구·가전 구입비용**은 **법인의 경비**로 처리하는 등 법인을 **사주일가**의 **사적인 소비 통로**로 **이용**하였습니다.

3 향후 추진방향

□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, **물가·환율 상방압력**을 **유발**하는 등 **시장 불안정성**을 키우면서, **정상적인 경제활동 범위**를 **넘어 부당하게 이득**을 취한 **시장 교란행위 탈세자**에 대해 **철저히 검증**하겠습니다.

○ 특히, **일시보관, 금융계좌 추적, 포렌식 기법** 등 **사용 가능한 수단**은 **모두 동원**하는 한편, **FIU 및 수사기관 정보, 외환자료** 등을 **적극 활용**하여,

○ **물가**와 **환율 변동성**을 **기회**로, **보이지 않는 편법적 이득**을 얻으면서도 마땅히 내야 할 **세금**을 **회피**하려는 행위를 **단호히 차단**하겠습니다.

□ 또한, 세무조사 과정에서 **조세범처벌법**상 장부·기록 파기 등 **증거인멸** 행위나, **재산은닉** 등 **범칙행위**가 확인될 경우 **수사기관에 고발**하여 **징역·벌금** 등 **위법행위**에 **상응**하는 **형사처벌**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.

○ 이를 통해, 시장지배력 남용 등 **변칙적 수법**으로 **시장질서**를 **훼손**하는 행위는 **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**는 **확고한 인식**을 심어주겠습니다.

□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**실생활**과 **밀접**하게 관련된 물가·환율 등 **시장동향**을 **면밀히 모니터링**하고, **민생**에 **부담**을 주는 **신종·변칙적 탈세유형**을 **선제적**으로 **발굴**하여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조사국 조사기획과	책임자	과 장 박상준 (044-204-3501)
		담당자	사무관 정성한 (044-204-3517)
<협조>	조사1과	책임자	과 장 구성진 (044-204-3551)
		담당자	서기관 이용후 (044-204-3552)
<협조>	조사2과	책임자	과 장 최지은 (044-204-3601)
		담당자	서기관 문성호 (044-204-3602)
<협조>	국제조사과	책임자	과 장 이상훈 (044-204-3651)
		담당자	서기관 이규진 (044-204-365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사례 ① [가격 담합]	담합사례금 지급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·수취,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이익 분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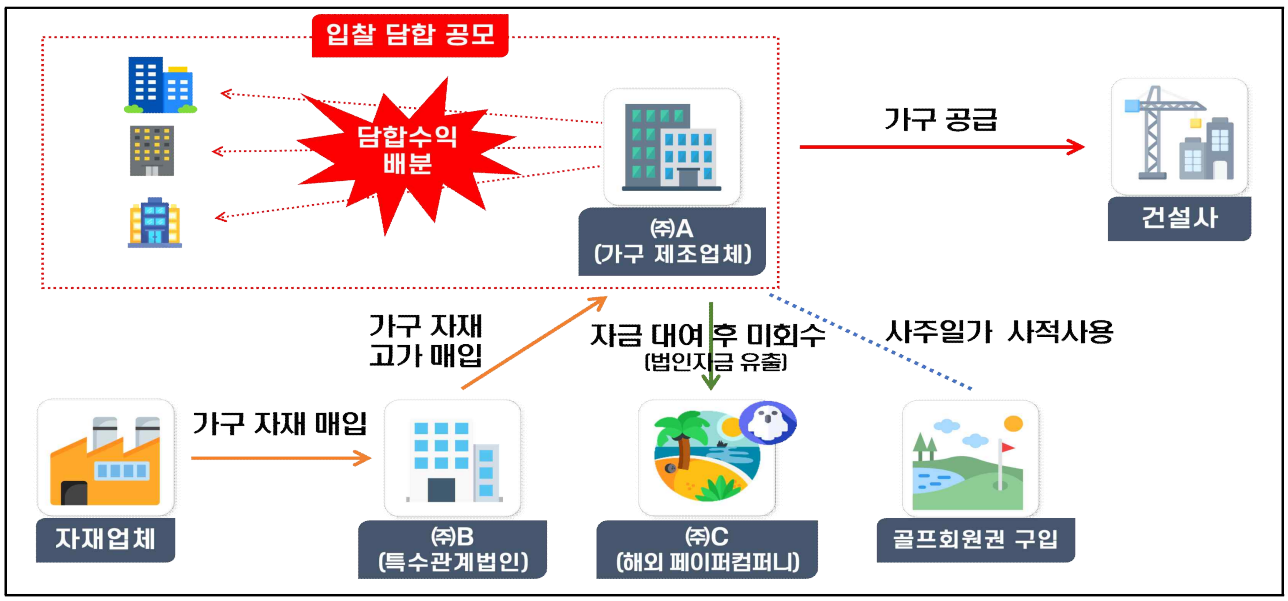

□ 주요 탈루혐의

○ ㈜A는 빌트인 및 시스템 가구를 건설사에 납품하는 **가구 제조업체**로, 여러 회사들과 **사전에 가격**을 **합의**하여 **입찰 담합**을 수십 차례 **실행**

- **담합사례금**을 **지급·수령**하는 **과정**에서 **실물 거래 없이** 들러리 업체로부터 **거짓 매입세금계산서**를 **수취**하거나, 역으로 들러리 업체가 되어 **거짓 매출세금계산서 교부**

○ 또한, **가구자재 매입**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인 ㈜B를 **거래단계**에 **끼워넣어 고가**에 **매입**하는 방식으로 **특수관계법인**에게 **이익 분여**

- 동남아에 소재한 **페이퍼컴퍼니** ㈜C에 **자금 대여** 후 회수한 것으로 **신고**하였으나, **실제로는 미회수**하는 등 **해외**로 **법인자금**을 **부당**하게 **유출**

- 업무와 무관한 **10억 원대**의 **고가 골프회원권**을 **법인자금**으로 **취득**하고 **사주 일가**가 **사적**으로 **사용**

□ 조사방향

○ 허위 용역 거래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·수취 행위,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

사례 ② [할당관세]	특수관계법인에게 수입육을 저가에 공급하여 이익 분여, 사주 자녀는 고액의 배당을 받아 호화·사치생활 영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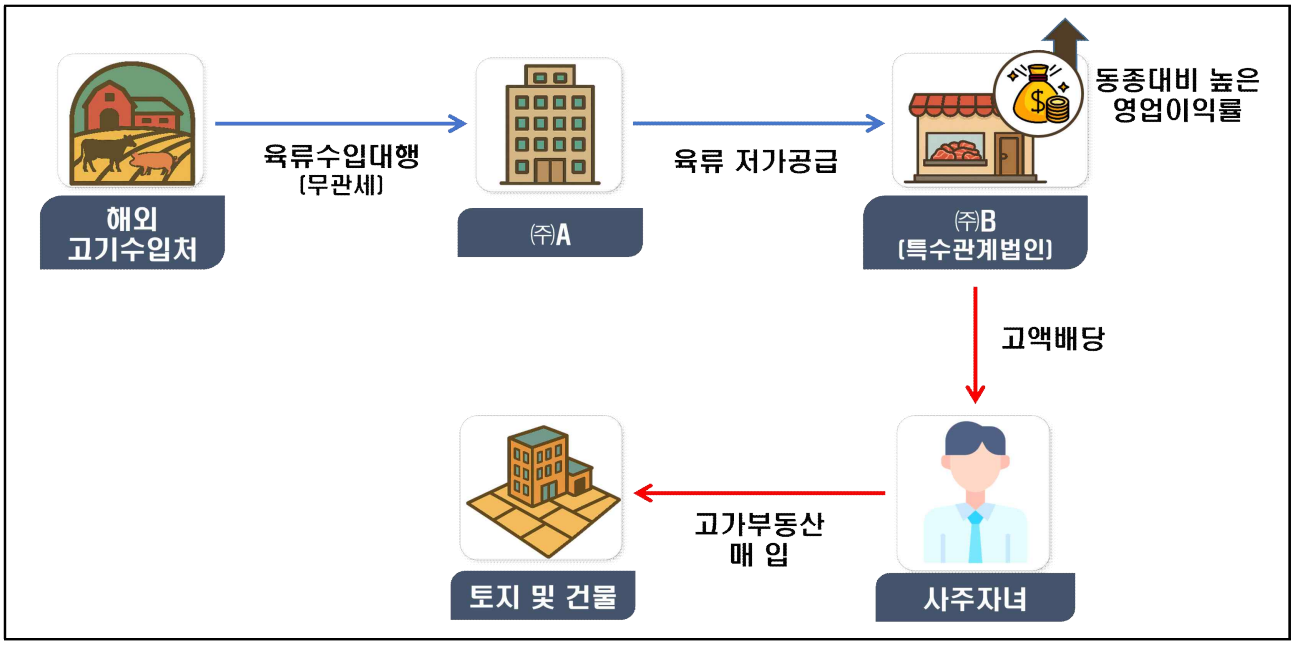

□ 주요 탈루혐의

○ ㈜A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한 **수입육 전문유통업체**로

- **매년 일정규모**의 **육류**를 **할당관세***를 적용받아 수입하고 사주일가가 주주로 있는 **특수관계법인** ㈜B에게 **육류**를 **공급**

* 물가안정을 위해 특정물품에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제도

○ ㈜A는 할당관세를 통해 **저렴하게 확보**한 **수입육**을 ㈜B에게 업종평균 대비 **절반**의 **마진율**만 남기고 **시가**보다 **저가**에 **공급**하여 **이익**을 **분여**한 결과, ㈜B는 **수년 전**에 비해 **매출액**이 **3배 이상 급증**

- ㈜B는 주주인 **사주의 자녀**에게 **고액 배당**을 **지급**하였고, **사주 자녀**는 이를 통해 **고가의 토지** 및 **건물**을 구매하는 등 호화·사치생활 영위

□ 조사방향

○ ㈜A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원재료 저가공급 혐의 등 엄정 조사

사례 ③ [슈링크 플레이션]	사주일가가 운영 중인 계열법인의 광고선전비 대신 부담, 가맹점 인테리어 업체 소개비 수입신고 누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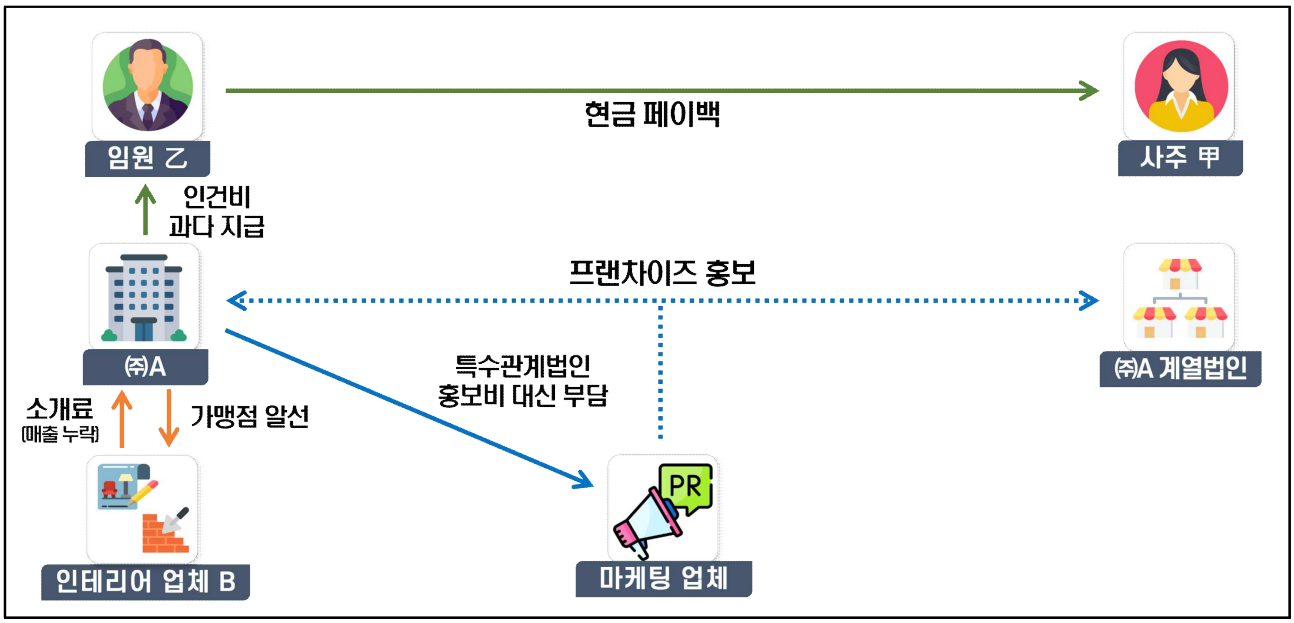

□ 주요 탈루혐의

○ ㈜A는 **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**로,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며 **음식 중량**을 **줄이는**, **숨은 가격상승 행위**(슈링크플레이션)로 **이익** 발생

○ ㈜A는 **프랜차이즈 홍보**와 관련한 **광고선전비**를 **계열법인**과 **공동**으로 **부담**하고 있으나,

- **사주일가**가 **운영 중**인 **계열법인**이 **부담해야 할 약 40억 원**의 **광고선전비**를 ㈜A가 **대신 지급**하는 방식으로 **부당**하게 **지원**

○ 또한, ㈜A는 ㈜B가 **가맹점 인테리어**를 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**연결**해 주며 **소개비**를 받고 있으나, **세금계산서 미발급**을 통해 **거래**를 **은폐**하여 **매출 누락**

- 임원 乙에게 **인건비**를 **과다 지급**하고, 사주 甲은 이 중 일부를 **현금**으로 **되돌려** 받는 수법으로 **법인자금 부당유출**

□ 조사방향

○ 공동경비를 대신 부담하고,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㈜A와 사주 甲에 대해 철저히 조사

사례 ④ [외환유출]	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등 외화자금 국내 미환류, 기업상장에 따른 사주일가 이익 편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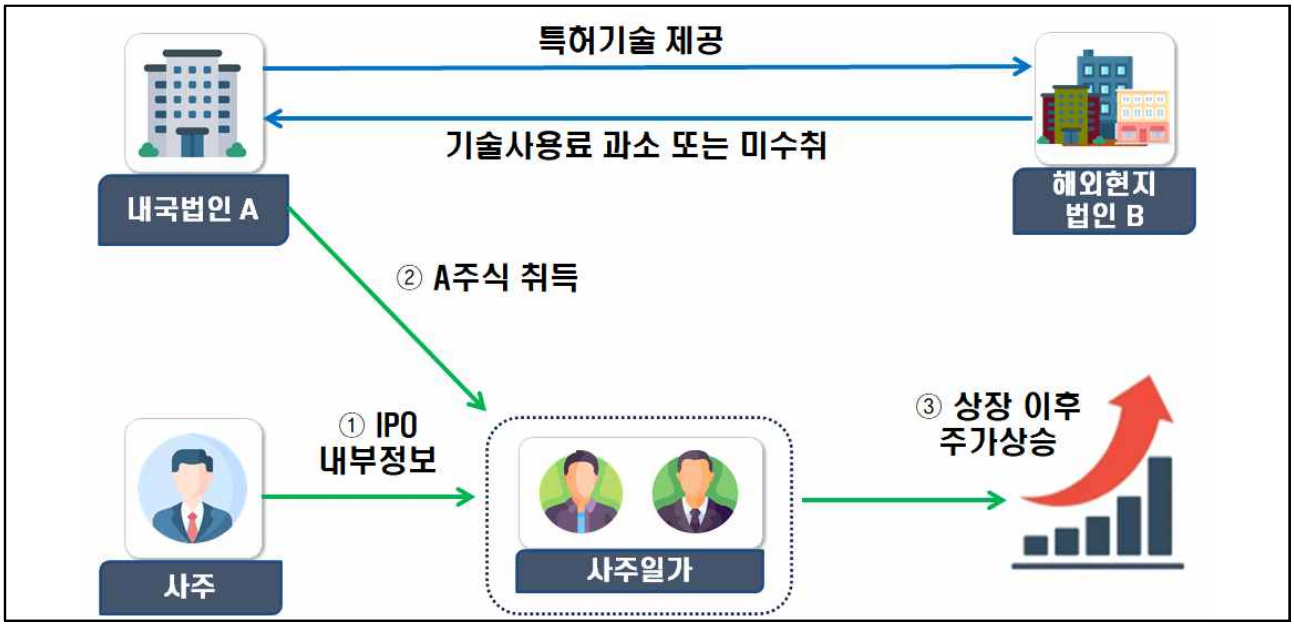

□ 주요 탈루혐의

○ ㈜A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**상장법인**으로,

- **특허권** 등 **다수**의 **무형자산**을 **보유**하고 있으며, 제품 생산을 위해 **해외현지법인** B를 **설립**하고 **제품 생산**에 필요한 노하우 등 **원천기술 제공**

- ㈜A는 해외현지법인 B로부터 **매출액**의 **일정비율**만큼 **기술사용료**를 **수취**하기로 하였으나, **실제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대가**를 받아 **약 1,500억 원**에 상당하는 **외화자금**이 **국내**로 **미환류**

○ 또한, **사주일가**는 사주로부터 ㈜A의 **IPO(기업공개)**에 관한 **내부정보**를 제공받고 **사전**에 **대량의 주식**을 **취득**

- 상장 이후 **공모가**를 **훨씬 상회**하는 **주가흐름**을 보이면서, **수십억 원**에 달하는 **시세차익**을 얻었음에도, **증여세 신고 누락***

*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의3)

□ 조사방향

○ 기술사용료를 미수취하고,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㈜A와 사주일가에 대해 철저히 조사

사례 ⑤ [외환유출]	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대외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소득활동을 은닉하고 외환을 유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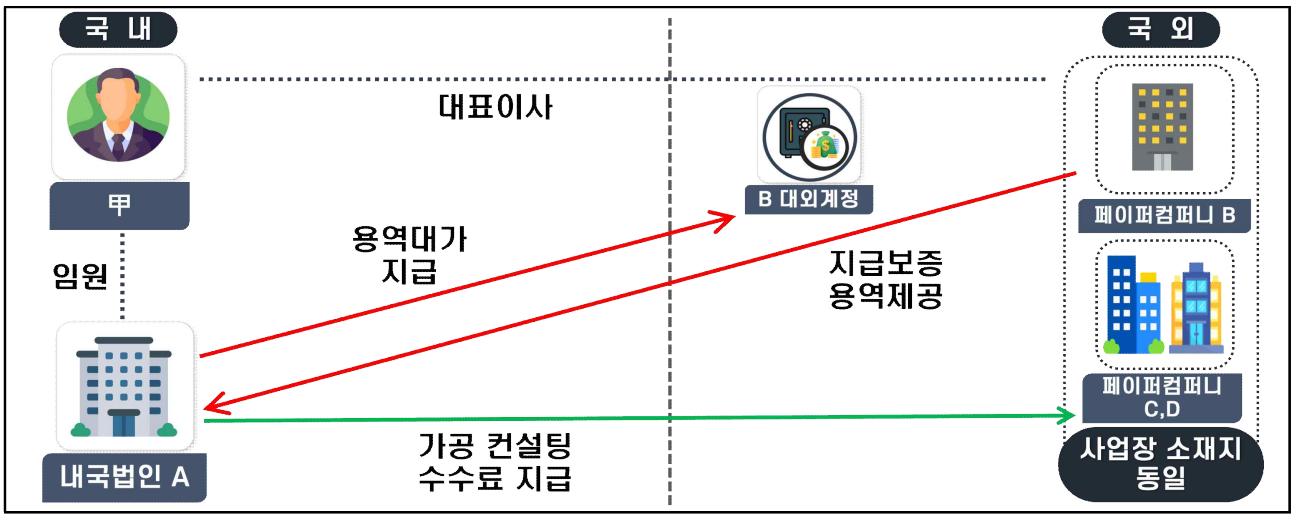

□ 주요 탈루혐의

○ **내국법인** A는 □□□□ 업무단지의 **개발사업비 조달**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, **최대주주**인 **외국법인** B로부터 **지급보증용역**을 **제공**받고, **그 대가로 약 70억 원**을 B가 보유한 **대외계정***을 통해 **지급**

* 비거주자, 외국인 거주자 등이 개설할 수 있는 외화자금 예치 목적의 예금계정으로, 외국환거래규정상 대외계정으로의 송금 및 수취는 국외 거래처럼 취급

- A는 국내에서 대외계정으로 이루어진 송금을 **국외 간 거래**로 **처리***함으로써, **외환거래 내역**에 대한 **노출 없이, 외환**을 **부당**하게 **해외**로 **유출**

* 대외계정(국외)↔대외계정(국외) 간 외환 송금은 국외 외환거래로 별도 관리·감독 無

- B는 실체가 없는 **페이퍼컴퍼니**로, A의 **임원 甲**이 B의 **대표**로 근무하며 **국내**에서 관련 **회계·재무자료**를 **작성**하는 등 **실질적 관리장소**는 **국내**임에도 **소득신고 사실**은 **전무**

○ 이에 더해, A는 B와 **동일한 장소**에 위치한 **국외 페이퍼컴퍼니** C, D에게 **실제 용역**을 제공받은 사실이 **확인되지 않음**에도 **컨설팅 명목**으로 수수료를 **지급**하는 등 **법인자금**을 **해외**로 **유출**

□ 조사방향

○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소득 신고의무를 회피하고, 고액의 외환을 국외 유출한 혐의 등에 대해 엄정 조사